

자주하는 질문 Q&A

민원인용 안내서

Q 신고 대상이나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.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A 네. 상단 오른쪽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민원인용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

Q 한 마리도 신고 대상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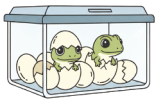


A 네. 마릿수와 상관없이 모두 보관·양도·양수·폐사 신고 대상이에요.

Q 보관 신고는 언제 하나요?

A 법 시행일(2025년 12월 14일) 이전에 보유한 동물은 **보관 신고**를 해야 하고, 그 이후에 분양받은 동물은 **양수 신고**만 하면 돼요.

Q 보관 신고 후에 새끼가 태어나면, 그 개체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


A 아니요. 백색목록 또는 수출·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은 새끼가 태어나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. 법 시행일에 보유중인 개체만 신고하면 돼요.
단, 지정관리 야생동물(백색목록 외)은 증식해서는 안돼요.

Q 무료로 분양하거나 친구한테 줘도 양도 · 양수 신고해야 하나요?

A 네. 판매하거나 무료 분양이거나 관계없이, 주고받는 모든 경우에는 양도·양수 신고가 필요해요.

Q 온라인 말고,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?

A 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, 해당 시·군·구청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돼요.

기후에너지환경부

책임운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

포유류 · 조류 · 파충류 · 양서류

야생동물을 키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!

- 백색목록 및 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대상 -



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,
반드시 보관신고하세요!

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
야생동물(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신고제도가
'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.

✔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
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 → 지정관리 야생동물

백색목록은
지정관리 야생동물 중
수입·거래를 허용하는
야생동물 입니다.



야생동물

기존 법정관리종

멸종위기종, CITES,
유입주의 생물,
생태계 교란 생물,
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,
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,
천연기념물, 가축 등

기존 법령 준수

지정관리 야생동물
(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

백색목록
수입·거래를 위해 신고

백색목록 외
원칙적 수입·거래 금지
(공익·연구 목적 시 예외적 허가)

✔ 법 시행일('25.12.14) 이전부터 사육중인
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, **백색목록**, **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**은 **보관** 신고 필수



법 시행일 이전부터 키우던 동물이
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경우
2026년 12월 13일(계도기간)까지
보관 신고하면, 해당 동물은 계속 기를 수 있어요.
단, 증식과 거래는 안돼요!

야생동물, '25년 12월 14일부터
키우게 된 순간부터 끝까지 신고가 필요해요.

✔ **양도·양수 :** 소유자 변경 등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,
양수자는 양수 신고

⚠ 법 시행일('25.12.14) 이후 분양·구매 등 거래 시 보관 신고 불필요
(양도· 양수만 신고)

✔ **폐사 :** 폐사 시 사진 첨부하여 폐사 신고



양도·양수



폐사

구분	기존 법정관리종	지정관리 야생동물	
	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	백색목록	백색목록 외
양도·양수 보관·폐사	신고	신고	신고

신고 : 원칙적 금지, 공익 연구 목적 시 예외적 허용

양도 · 양수 · 보관 · 폐사 신고 방법

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속
(wims.mcee.go.kr)

신고서 작성 → 보관 양도 양수 / 폐사

접수(시·군·구청)

서류 검토 및 결재

신고확인증 교부
(우편 또는 온라인 수령)